



연락처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경찰 보고서/사건 번호: \_\_\_\_\_

메모: \_\_\_\_\_

**Marsy 카드와 지원 자원**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조 28(b)항은 범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특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 **공정성과 존중심** -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공정성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를 받고 형사 또는 청소년 사법 과정의 전체 과정에서 협박, 괴롭힘 및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2. **피고로부터의 보호** - 피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3. **보석금과 석방 조건 결정 시 피해자의 안전 고려** - 피고의 보석 금액 및 석방 조건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게 할 권리.
4. **비밀 정보 공개 방지** -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찾거나 괴롭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병원 치료 또는 상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나눈 비밀 대화를 공개하거나,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보호를 받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비밀 정보나 기록을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
5. **피고 변호사의 면담 거절** -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면담, 선서 증언 또는 강제 발표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면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건을 정할 권리.
6. **기소 기관과의 협의 및 재판 전 처분 통지서**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의 체포(기소자가 알고 있는 경우), 기소된 혐의, 피고를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받고 기소 기관과 적절하게 협의할 권리, 그리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처분을 하기 전에 통지와 정보를 받을 권리.
7. **공적 절차에 대한 통지 및 출석** - 피고와 기소자가 출석할 권리가 있는 모든 공적 절차(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년 비행 법적 절차 포함), 모든 가석방 또는 다른 유죄판결 후 석방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고, 그러한 모든 절차에 출석할 권리.
8. **법적 절차에 대한 출석 및 의견 제시**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모든 법적 절차(체포 후 석방 결정, 진술, 선고, 유죄판결 후 석방 결정과 관련된 소년 비행 법적 절차 포함), 또는 피해자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 법적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
9.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판결** -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최종 판결 및 사건과 관련된 판결 후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
10. **집행유예국에 대한 정보 제공** - 선고 전 조사를 수행하는 집행유예국 담당관에게 해당 범죄가 피해자와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에 대한 선고를 하기 전에 선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11. **선고 전 보고서의 수령**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에게 선고 전 보고서를 제공할 때 이 보고서를 받을 권리(법에 의해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부분은 제외).
12. **유죄 판결, 선고, 수감, 석방, 도주에 대한 정보**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수감 장소 및 시간, 또는 피고에 대한 다른 처분, 피고의 석방 예정일, 피고가 수감으로부터 석방 또는 도주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13. **손해배상**
  - A. 범죄 행위의 결과로 손실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확보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명백한 의도이다.
  - B. 범죄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모든 사건에서 강력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범죄자에게 부과된 형량이나 처분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 C.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모든 금전적 지불금, 금전 및 재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4. **재산의 신속한 반환** -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신속하게 반환 받을 권리.



연락처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경찰 보고서/사건 번호: \_\_\_\_\_

메모: \_\_\_\_\_

**Marsy 카드와 지원 자원**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조 28(b)항은 범죄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특정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1. **공정성과 존중심** - 피해자의 사생활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공정성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우를 받고 형사 또는 청소년 사법 과정의 전체 과정에서 협박, 괴롭힘 및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
2. **피고로부터의 보호** - 피고와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권리.
3. **보석금과 석방 조건 결정 시 피해자의 안전 고려** - 피고의 보석 금액 및 석방 조건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게 할 권리.
4. **비밀 정보 공개 방지** -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찾거나 괴롭히기 위해 사용할 수 있거나, 병원 치료 또는 상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나눈 비밀 대화를 공개하거나, 또는 법률에 의해 달리 보호를 받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비밀 정보나 기록을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방지할 권리.
5. **피고 변호사의 면담 거절** - 피고, 피고의 변호사, 또는 피고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이 요청하는 면담, 선서 증언 또는 강제 발표를 거절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면담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적절한 조건을 정할 권리.
6. **기소 기관과의 협의 및 재판 전 처분 통지서**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의 체포(기소자가 알고 있는 경우), 기소된 혐의, 피고를 인도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대해 적절한 통지를 받고 기소 기관과 적절하게 협의할 권리, 그리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재판 전 처분을 하기 전에 통지와 정보를 받을 권리.
7. **공적 절차에 대한 통지 및 출석** - 피고와 기소자가 출석할 권리가 있는 모든 공적 절차(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년 비행 법적 절차 포함), 모든 가석방 또는 다른 유죄판결 후 석방 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고, 그러한 모든 절차에 출석할 권리.
8. **법적 절차에 대한 출석 및 의견 제시**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모든 법적 절차(체포 후 석방 결정, 진술, 선고, 유죄판결 후 석방 결정과 관련된 소년 비행 법적 절차 포함), 또는 피해자의 권리가 문제가 되는 법적 절차에서 의견을 제시할 권리.
9.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판결** -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최종 판결 및 사건과 관련된 판결 후 법적 절차에 대한 권리.
10. **집행유예국에 대한 정보 제공** - 선고 전 조사를 수행하는 집행유예국 담당관에게 해당 범죄가 피해자와 피해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에 대한 선고를 하기 전에 선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11. **선고 전 보고서의 수령**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고에게 선고 전 보고서를 제공할 때 이 보고서를 받을 권리(법에 의해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부분은 제외).
12. **유죄 판결, 선고, 수감, 석방, 도주에 대한 정보** -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유죄판결, 선고, 수감 장소 및 시간, 또는 피고에 대한 다른 처분, 피고의 석방 예정일, 피고가 수감으로부터 석방 또는 도주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13. **손해배상**
  - A.범죄 행위의 결과로 손실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일어난 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확보할 권리를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명백한 의도이다.
  - B.범죄 피해자가 손실을 입은 모든 사건에서 강력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범죄자에게 부과된 형량이나 처분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을 명령해야 한다.
  - C.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한 모든 금전적 지불금, 금전 및 재산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명령을 받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14. **재산의 신속한 반환** -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은 재산을 신속하게 반환 받을 권리.

15. 가석방 절차 및 가석방에 대한 통지 - 모든 가석방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받고, 가석방 과정에 참여하고, 가석방 당국이 범죄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범죄자의 가석방 또는 다른 석방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16. 가석방 시 피해자와 일반대중의 안전 고려 - 가석방 또는 다른 판결 후 석방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일반대중의 안전을 고려하게 할 권리.

17. 이 16개 항의 권리에 대한 정보 - (1)에서 (16)목까지 열거된 권리들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

### 추가 지원 자원

법무부장관은 아래의 기관 및 단체의 견해, 서비스, 정보를 지지하거나, 통제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상 위원회 -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지불을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정신 건강 상담, 장례비, 소득 손실, 범죄 현장 청소, 이주, 의료 및 치과 비용.  
**1-800-777-9229 [www.victims.ca.gov](http://www.victims.ca.gov)**

캘리포니아 주 교정재활부 피해자 및 생존자 권리 및 서비스국, **OVSRS** -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동안 그 범죄자의 석방, 가석방, 손해 배상 상태 및 가석방 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877-256-6877 [www.cdcr.ca.gov/victim\\_services](http://www.cdcr.ca.gov/victim_services)**

맥조지 법과대학 -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역별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800-Victims (1-800-842-8467) [www.1800victims.org](http://www.1800victims.org)**

전국 가정 폭력 긴급 전화 - **1-800-799-7233 [www.thehotline.org](http://www.thehotline.org)**

성인 보호 서비스 카운티 정보 - (노인 학대) 캘리포니아 주의 카운티별 24시간 핫라인 전화번호. **[www.cdss.ca.gov/inforesources/County-APS-Offices](http://www.cdss.ca.gov/inforesources/County-APS-Offices)**

전국 아동 학대 긴급 전화 - 아동 학대 치료 및 방지. **1-800-422-4453 [www.childhelp.org](http://www.childhelp.org)**

성폭행, 학대, 근친 상간 전국 네트워크 긴급 전화 - **1-800-656-4673 [www.rainn.org](http://www.rainn.org)**

전국 인신 매매 지원 센터 긴급 전화 - 24시간 핫라인: **1-888-373-7888 [www.humantraffickinghotline.org](http://www.humantraffickinghotline.org)**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 언어 장애,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사람은 **711**로 전화하십시오. **TTY/HCO/VCO**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전화번호는 영어: **1-800-735-2929**, 스페인어: **1-800-855-3000**입니다. 음성을 **TTY/VCO/HCO**로 변환하는 전화번호는 영어: **1-800-735-2922**, 스페인어: **1-800-855-3000**입니다. **Speech to Speech**(음성 통역) - 영어와 스페인어: **1-800-854-7784**.

법무부장관 직속 피해자 서비스과 - 해당 지역의 피해자/증인 정보, 지리 자원 정보 및 범죄 피해자의 이의 신청 상태를 알려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877-433-9069**로 전화하거나, 또는 **[www.oag.ca.gov/victimservices](http://www.oag.ca.gov/victimservices)** 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인신매매 정보를 원하시면, **[www.oag.ca.gov/human-trafficking](http://www.oag.ca.gov/human-trafficking)** 을 방문하십시오

\*\*\*\*\*

‘피해자’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어떤 사람이 범죄 또는 비행 행위를 저질렀거나 이를 시도한 결과로 직접적인 신체적, 심리적 또는 재정적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피해와 관련된 위협을 받은 사람 이라고 정의된다. ‘피해자’ 라는 용어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보호자, 그리고 사망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자인 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도 포함된다.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사람, 피고, 또는 법원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은 ‘피해자’라는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28(e)항)

피해자, 피해자가 고용한 변호사, 피해자의 적법 대리인 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재판법원 또는 항소법원에서 위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28(c)(1)항)



15. 가석방 절차 및 가석방에 대한 통지 - 모든 가석방 절차에 대해 정보를 받고, 가석방 과정에 참여하고, 가석방 당국이 범죄자에게 가석방을 허용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범죄자의 가석방 또는 다른 석방에 대한 통지를 받을 권리.

16. 가석방 시 피해자와 일반대중의 안전 고려 - 가석방 또는 다른 판결 후 석방 결정을 하기 전에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그리고 일반대중의 안전을 고려하게 할 권리.

17. 이 16개 항의 권리에 대한 정보 - (1)에서 (16)목까지 열거된 권리들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

### 추가 지원 자원

법무부장관은 아래의 기관 및 단체의 견해, 서비스, 정보를 지지하거나, 통제하거나, 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보상 위원회 -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지불을 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정신 건강 상담, 장례비, 소득 손실, 범죄 현장 청소, 이주, 의료 및 치과 비용.  
**1-800-777-9229 [www.victims.ca.gov](http://www.victims.ca.gov)**

캘리포니아 주 교정재활부 피해자 및 생존자 권리 및 서비스국, **OVSRS** -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동안 그 범죄자의 석방, 가석방, 손해 배상 상태 및 가석방 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877-256-6877 [www.cdcr.ca.gov/victim\\_services](http://www.cdcr.ca.gov/victim_services)**

맥조지 법과대학 -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지역별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1-800-Victims (1-800-842-8467) [www.1800victims.org](http://www.1800victims.org)**

전국 가정 폭력 긴급 전화 - **1-800-799-7233 [www.thehotline.org](http://www.thehotline.org)**

성인 보호 서비스 카운티 정보 - (노인 학대) 캘리포니아 주의 카운티별 24시간 핫라인 전화번호. **[www.cdss.ca.gov/inforesources/County-APS-Offices](http://www.cdss.ca.gov/inforesources/County-APS-Offices)**

전국 아동 학대 긴급 전화 - 아동 학대 치료 및 방지. **1-800-422-4453 [www.childhelp.org](http://www.childhelp.org)**

성폭행, 학대, 근친 상간 전국 네트워크 긴급 전화 - **1-800-656-4673 [www.rainn.org](http://www.rainn.org)**

전국 인신 매매 지원 센터 긴급 전화 - 24시간 핫라인: **1-888-373-7888 [www.humantraffickinghotline.org](http://www.humantraffickinghotline.org)**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 언어 장애,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사람은 **711**로 전화하십시오. **TTY/HCO/VCO**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전화번호는 영어: **1-800-735-2929**, 스페인어: **1-800-855-3000**입니다. 음성을 **TTY/VCO/HCO**로 변환하는 전화번호는 영어: **1-800-735-2922**, 스페인어: **1-800-855-3000**입니다. **Speech to Speech**(음성 통역) - 영어와 스페인어: **1-800-854-7784**.

법무부장관 직속 피해자 서비스과 - 해당 지역의 피해자/증인 정보, 지리 자원 정보 및 범죄 피해자의 이의 신청 상태를 알려줍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1-877-433-9069**로 전화하거나, 또는 **[www.oag.ca.gov/victimservices](http://www.oag.ca.gov/victimservices)** 를 방문하십시오. 지역 인신매매 정보를 원하시면, **[www.oag.ca.gov/human-trafficking](http://www.oag.ca.gov/human-trafficking)** 을 방문하십시오

\*\*\*\*\*

‘피해자’란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어떤 사람이 범죄 또는 비행 행위를 저질렀거나 이를 시도한 결과로 직접적인 신체적, 심리적 또는 재정적 피해를 입었거나 그러한 피해와 관련된 위협을 받은 사람 이라고 정의된다. ‘피해자’ 라는 용어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또는 보호자, 그리고 사망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무능력자인 범죄 피해자의 법적 대리인도 포함된다.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 사람, 피고, 또는 법원이 미성년 피해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람은 ‘피해자’라는 용어에 포함되지 않는다.”(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28(e)항)

피해자, 피해자가 고용한 변호사, 피해자의 적법 대리인 또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재판법원 또는 항소법원에서 위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다. 해당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28(c)(1)항)

